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

이정규
브릿지바이오(주) 대표이사
2015년 12월 1일

브릿지바이오(주) 소개

초기과학이 내포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초기기술평가전문집단**입니다.

글로벌 라이센싱 위해 필요한 핵심자료를 파악하고, 외부기관들과 협력하는, 자원(시간/자본)효율성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집단**입니다.

개발초기단계 (IND 전후 혹은 첫임상적 개념입증)에서 글로벌 개발을 수행할 다국적제약사나 대형바이오텍회사를 발굴하고, 파트너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개발전문집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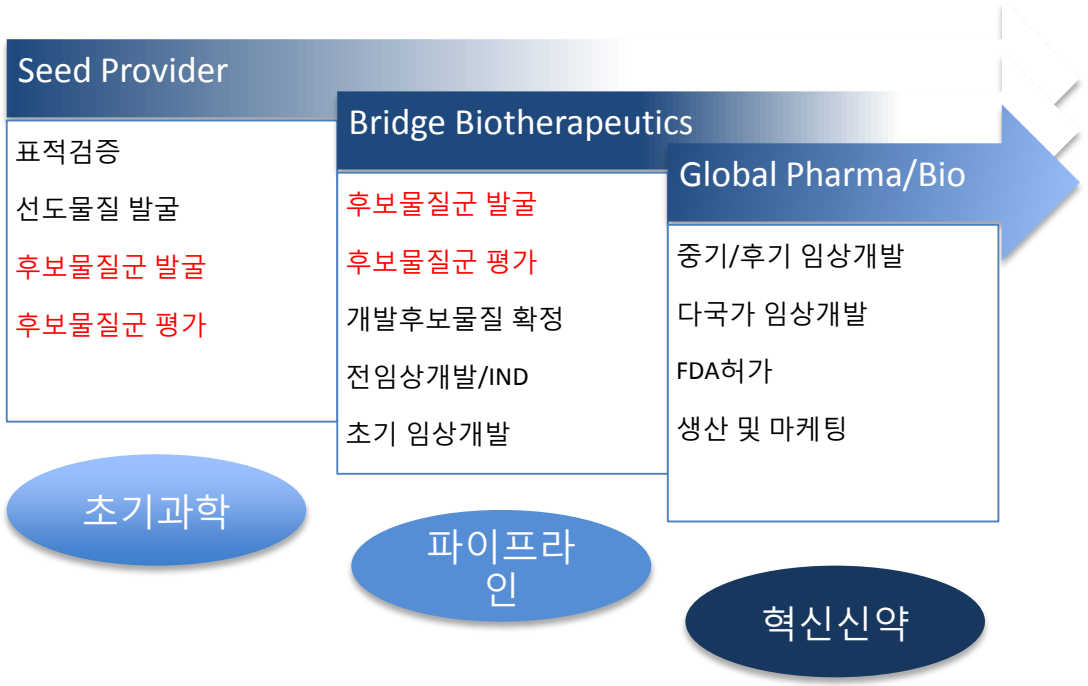

bridgebio therapeutics

바이오파마 산업의 특증

- 사회경제적 이슈들과 밀접히 연관
- 규제 산업
- 10년 이상의 TTM (Time-to-market)
- 혁신기술의 지속적 등장
- 자본시장과 초기부터 밀접한 관련
- 글로벌화되어야 ROI 확보 가능

-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과학화
- 시장 친화적 자본시장
- 좀더 높은 글로벌 경쟁 환경

bridgebio therapeutics

초기기업 육성 방안

- 씨앗 제공자 [Seed provider]
- 영양분 제공자 [Investors]
- 햇빛 제공자 [Government]

- 정부 연구비 지원제도
- 한교/정부연구기관 TLO [TTO] 기능
- 좀더 스마트해진 투자가들
- 인재들의 참여
- 코스닥 진입 제도

기술의 공급

- **학교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수 겸직제도에 대한 개선**
  현재) 본인 혹은 친인척 통한 실질적 겸직
  제안) 겸직 금지 통해 기술자문 역할로 제한

-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 외주화**
  - 업무의 전문화 (외주화 혹은 EIR 제도 도입)
  - 성과배분시 장기성 강조 (예: 업프런트의 주식연계)
  - 지적 재산권 확보 전문성
  -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활용

- 산업체와의 기준의 공유

인재의 공급

- **신약연구개발 경험있는 인력들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현재) 이사회 구성이 집행이사 편중 (경험 set의 제한성)

  제안) 상장기업 임원들도 관련 초기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Mentoring 역할)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제 개편**

  현재) 보유기간 등과 관련없이 일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 세율적용

  제안)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자본소득으로 간주 혹은 근로소득으로 하되, 차별적 세율 적용

- **Interim C-level executive 제도의 도입**

  현재) 투자가들이 책임성을 강조하여 전임자채용을 선호

  제안) CEO/CFO 등을 설립초기 interim 으로 채용

자본 공급 & 회수 시장 측면

- **초기 투자를 가이드할만한 전문 엔젤투자가 그룹의 형성**

- **1세대 창업가 펀드 [가칭]**
  배경) 경험을 갖춘 1세대들이 15년 넘게 동일 기업에 근무
  제안) 성공적 창업가들의 회수를 돕고, 동시에 전문 엔젤펀드 활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예1) 펀드 재투자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예2) 창업1세대의 엔젤펀드 설립시 정부에서 동일 금액 매칭

- **코스닥에서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창구지도 변화**
  → 투자가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 실제 가치 중심의 투자

- [초기설립자 = 경영자] 공식의 개선. 좀더 투자가 중심으로 경영진 구성 변경

- 정부 연구비 지원시 [기업부설연구소] 조건의 폐지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에 더 강조)

기타

- **인큐베이터의 고도화**

  현재) 공간 (깡통) 임대

  제안) Built-in 공간 임대 [기초 실험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을 갖춘 인큐베이터]

  - 랩센트런 LabCentral, 보스톤지역 (http://labcentral.org/)

- **VC에서 벤처파트너 제도 적극 도입**

  배경) Chief Medical Officer 등은 단일 스타트업이 채용하기 어려움. 또한 full-time의 필요성 없음

  제안) VC들이 MD를 벤처파트너로 채용하여 투자심사에도 활용하되, 사후 벤처들의 임상등 지원.

감사합니다.